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 2 차 정 무 위 원 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영기한 연장〉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3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2. 27.
3. 회 부 일 : 2026. 3. 3.

II. 제안이유

2003년부터 매년 저축은행 부실이 발생하여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2010년경 예금보험기금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결손이 2.9조원으로 누적되었고, 특히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대규모 자금지원 소요가 발생하면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011년 4월 1일 상호저축은행계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전 업권이 예금보험료 중 100분의 45를 적립하고, '11.1월 이후 발생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자금을 지원하며, '2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었음.

당초 지원 규모를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특별계정 설치 이후 상호저축은행 부실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예상 대비 12.2조원 증가한 27.2조원을 지원하였음. 이로 인하여 특별계정의 운영이 종료되는 2026년말에는 약 1.2~1.6조원 규모의 부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

계정이 종료되기 전에 부채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하여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특별계정의 결손을 해소하고자 함.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고, 저축은행 업권의 대규모 부실에 금융권이 공동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금융업권이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년 3월 9일)에서 지원자금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영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언급되었던 점도 고려하였음(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Ⅲ. 검토의견: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함)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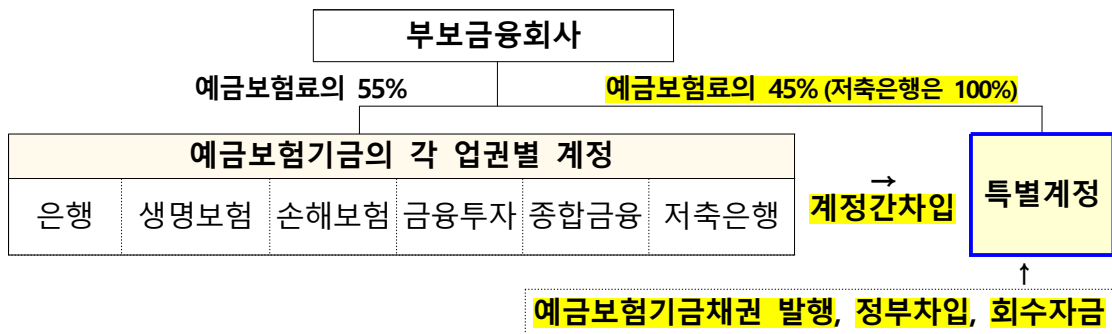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24조 의4의 개정규정은 <u>2026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생 략)	법률 제10476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특별계정의 유효기간 등) ① -- ----- <u>2027년 12월 31일</u> ----- ② (현행과 같음)

□ 예금보험공사는 각 부보금융회사¹⁾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 예금보험제도²⁾ 운영 및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금보험기금은 ① 은행, 금융투자, 손해보험, 생명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운용하는 각 업권별 고유계정과 ②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특별계정으로 구성됨.

1) 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
2)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만약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하는 제도

현행법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 등의 잔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³⁾을 곱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고 있는데,⁴⁾ 이 납부된 보험료의 55%는 각 고유계정에, 나머지 45%는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금융업권 공동으로 이 특별계정을 지원하고 있음.⁵⁾



□ 특별계정은 대규모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지출이 수입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마련된 것임.

3) 업권별 예금보험료율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투회사	저축은행
0.08%	0.15%	0.15%	0.15%	0.40%

4) 「예금자보호법」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5)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상호저축은행계정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 특별계정의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법률 제10476호, 부칙 제2조)

특별계정 설치와 관련된 입법 논의 당시, 특정 업권의 부담여력을 초과하는 부실에 대해 금융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동계정’을 설치해 ‘상시운영’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만 지원하도록 명칭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으로 변경하고, 운영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어 의결되었음.⁶⁾

□ 그런데, 2025년 말 기준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의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계정의 순자산은 △2.9조원이며,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순자산 역시 △2조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예금보험기금 각 계정별 예금보험료율 및 지원·적립 현황>

(2025년 12월 말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업권별 고유계정					저축은행 특별계정
	은행	손해보험	생명보험	금투회사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0.08%	0.15%	0.15%	0.15%	0.40%	-
기금적립액 ^주	153,344	13,901	62,726	6,403	△19,565	△29,482 ⁷⁾

주: 2025년 12월 말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금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 또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특별계정 순자산 추정자료에 따르면, 2026년 말 기준 약 1.5조원의 결손이 예상되며, 부채 상환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의 1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0015호, 이사철의원안) 심사보고서(2011. 3.)

7) <특별계정의 자산 및 부채 현황>

(2025.12월말 기준, 단위: 억원)

자 산				부 채				순자산
구상 채권	미수 보험료	기타 (현금 등)	소계	외부차입 (채권 정부용자)	계정간 차입	기타 (미지급 이자 등)	소계	
4,380	8,943	68	13,391	22,300	18,133	2,440	42,873	29,482

(자료: 금융위원회)

<특별계정의 2026년·2027년 말 순자산 추정>

(단위 : 억원)

2025년	2026년			2027년		
순자산	수입 (예금보험료*)	지출 (이자비용)	순자산 (자산-부채)	수입 (예금보험료*)	지출 (이자비용)	순자산 (자산-부채)
△29,482	14,830	496	△15,148	15,276	39	89

* 전년도 특별계정 예금보험료 수입 × 최근년도(2025년) 업권별 부보예금증가율

(자료: 금융위원회)

□ 이러한 특별계정 결손의 원인은 동 계정 설치 당시 저축은행 지원 규모를 약 15조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는 31개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총 27.2조원이 지원되는 등 해당 계정의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임.⁸⁾

<특별계정의 총 지원규모 및 부채상환 현황(2025. 12. 기준)>

총 지원 : 27.2조원⁹⁾ - 31개 저축은행 지원 (2011.1.~2015.1.)	상 환 : 22.9조원 (① + ② - ③)	
	① 회수자금	14.3조원
	② 예금보험료	13.8조원
	③ 이자비용(예보채, 차입금) 등	5.2조원
	부 채 : 4.3조원	
	※ 자산(현금, 구상채권 등) 1.3조원 감안 시 순자산은 △2.9조원	

8)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관리백서」, 예금보험공사, 2026.3. P.2

9) <부실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의 재원조성 내역>

(단위 : 조원)

합계	외부조달			자체조달
	예보기금채권*	정부차입**	예보기금 계정간차입	
27.2	23.3	0.3	1.8	1.8

* (예보채) 2011~2013년 발행 / ** (정부차입) 2012~201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차입

□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동 계정의 남은 부채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다른 금융업권의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으나¹⁰⁾, 한 업권의 부실이 다른 업권으로 전이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별계정의 부채를 신속히 정리해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를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당초 특별계정을 설치한 이유는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모든 부보금융업권이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에 1년 더 동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설명함.¹¹⁾

문 의 처

02)6788-5113

10)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②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5. 제30조제1항에 따라 각 부보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연간 보험료 중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보험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보험료는 특별계정의 상호저축은행계정에 대한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전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할 수 있다.

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전 금융업권 참여로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1년 연장을 추진합니다」, 2026. 2. 11.